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04
-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찬성의원 35명)
- 발 의 일 : 2021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
- 이에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사항을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 소관의 명확한 기준 설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 2. 16.~2. 2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의 ‘가산금’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사항 중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유사한 제도의 중첩적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부과 오해 등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등 종전까지 사용된 관련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임.

※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사항(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5조제5항)의 시행시기는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시기(2022.2.3.)에 맞추어 규정하였음.

지방세기본법 (2020. 12. 29, 일부개정)

종 전	현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 납부지연 제재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일원화 및 용어순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u>가산세로 통합</u> ○ 용어를 <u>납부지연가산세</u> 로 변경 ※ 시행: 2022.2.3.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
(지방세기본법, 2022.2.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5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54)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56)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 (§55)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가산금	가산금 (1회 3%)		
	중가산금 (매월 0.75%)		

※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도 동일하게 명칭, 산정방식 등 정비

-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는 대부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본 조례 제3조제1항)하고 있으며,
 - 이 중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체납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목적으로,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현행)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생략)

- 여기서 가산금이란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제30조)과 증가산금(제31조)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가산금 종류(지방세징수법)>

구분	조 건	금액	부과횟수
가산금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의 3%	1회
증가산금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고지세액의 0.75%	최대 60개월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종전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납부지연 제재 수단임.
- 한편,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2022.2.3. 시행,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55)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지방세기본법 §55)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5%) (지방세기본법 §55①1.)
가산금(1회 3%) (지방세징수법 §30)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지방세기본법 §55①3.)
중가산금(매월 0.75%) (지방세징수법 §31)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지방세기본법 §55①4.)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언급 없이, 본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단순히 상위법 개정 용어를 준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기준을 현행 ‘가산금을 제외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더하여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 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가산금을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 다. (생 략) ③·④ (생 략)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납부지연가산세를</u>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따라서, 본 안은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된 안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 가산금만을 제외한 고액체납액을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현행)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생략)

- 상위법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p> <p>1. ~ 3. (생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p> <p>가. ~ 다.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u>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략) ☞ (중전 “납부불성실가산세”)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 (중전 “가산금”)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 (중전 “증가산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이하 생략)

<현행 가산세 종류>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지방세법상 가산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특별징수 불성실	장부작성 의무위반	미등기 전매	장부 미기재	기장의무 불이행 등	증빙불비, 미기장 등
20% (40%)	10% (40%)	1일 0.025%	3% + 1일 0.025%	10%	80%	10%	10% (30%)	10%

- 한편,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앞에서 본 ‘납부지연가산세’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과 이를 반영한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에 맞추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문(2021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 행정안전부-6196(2020.12.31.))의 적용요령에서는 가산세·가산금 통합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시기인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착수보고 개최 (2021.3.5.)’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2023년 (2023.1.25.)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향후 해당 법령을 비롯한 본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국가 및 자치단체 수탁)
- ❖ 사업자 : 메타넷대우정보(주) 컨소시엄(메타넷대우정보 & 오케스트로)
- ❖ 계약금액 : 102,120,000,000원 * 계약기간 : 2021.1.29. ~ **2023.2.1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294(2021.2.25.)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요청’ 공문 및 설명자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자료 1 - 가산세·가산금 통합관련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현 행
<p>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p> <p>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u>한도로 한다</u>.</p> <p>1. <u>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p> <p>2. <u>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u></p>	<p>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한다)하거나 -----</p> <p>----- <u>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u>-----</p> <p>----- <u>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u></p> <p>1. <u>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이자상당액-----</u> <u>법정납부기한의 -----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u></p> <p>2. ----- <u>이자상당액</u>-----</p>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2. 2. 3.]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5조제5항

참고 자료 2

- 지방세 관련 4개 법령별 위임 조례 현황 -

지방세 관계 법령		위임조례	
법명	목적사항	조례명	목적사항
지방세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